# 장비 대여 계약서

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(이 하 "IPS"라고 함)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더셀 주식회사(이하 "더셀"라고 함)는 2016년 11월 [28]일 ("효력발생일")부로 다음과 같은 장비대여계약서를 체결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# - 다음 -

# 제1조 (장비 대여)

- ① IPS는 더셀이 IPS에게 납품하는 Gemini 설비의 Transfer Module(이하 "TM")이 다른 부품 과의 결합 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장비(이하 "장비"라 칭함)를 더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.
  - i) EFEM(Equipment Front End Module)
  - ii) EFEM에 부속되거나 부착되어 작동되는 기타 부품
- ② 더셀은 당해 장비를 IPS로부터 대여 받은 날로부터 즉시 EFEM의 JIG 형태 또는 그와 유사한 Prototype의 EFEM을 제작하여 본 계약의 대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IPS에게 납품되는 TM의 전체적인 cycle test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③ 더셀은 IPS로부터 대여 받은 본 장비를 이송, 설치, 운영, 관리 및 반환하는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, IPS가 당해 장비를 대여하는 그 시점의 장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2조 (사용 목적)

- ① IPS는 본 계약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더셀이 IPS에게 납품하는 TM의 부분적인 기능점검이 아닌 다른 부품(EFEM TM Dumi Chamber)들과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서의 전체적인 Cycle이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본 장비를 더셀에게 대여 하고, 더셀은 본 조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EFEM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더셀은 IPS로부터 본 장비를 대여 받는 사유가 대여 기간 중에 본 장비를 설치,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IPS에게 납품되는 일체의 TM에 대한 전체 Cycle Tes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




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, 그에 따라 별도의 EFEM JIG 형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EFEM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하여 본 계약의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 야 한다. 단, 더셀은 IPS가 본 장비를 대여하고, 그와 유사한 EFEM을 제작하게 하는 것이 IPS에 납품되는 TM의 전체 Cycle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, 더셀의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실험,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.

# 제3조 (사용 장소)

본 계약에 따라 IPS가 대여하는 본 장비는 더셀의 제조시설이 위치한 <u>평택시 포승읍 더셀Fab</u>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더셀의 제조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의 임직원(IPS 임직원 및 더셀의 임직원을 제외한 일체의 개인 또는 임직원을 말함)이 본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제4조 (대여 기간)

본 장비의 대여 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로 하되, 대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해 본 조의 대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5조 (대여 비용)

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대여 비용은 대여 기간 동안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또한 본 장비의 이송, 설치(set-up), 운영, 관리(본 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 정하지 아니 한다), 반환 및 전체 cycle test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더셀의 부담으로 하며, IPS는 본 장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.

## 제6조 (장비의 소유권)

- ① 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은 이를 제공한 IPS에게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, 본 계약이 더셀에게 장비의 소유권, 그에 부속되어 있는 부품 및 그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- ② 더셀은 본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동안 당해 장비의 소유권이 IPS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장비가 담보, 보증, 질권, (가)압류,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만약 본 장비에 대한 IPS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더셀이 부담한다.
- ③ 더셀은 IP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장비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만약 본 계약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본 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사용 대상자, 목적,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.

## 제7조 (Software의 지원)

- ① IPS는 본 장비가 IPS 소유의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사용하여야만 IPS가 원하는 Cycle Test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함에 따라 더셀에게 본 장비의 대여 기간 중 Software를 지원하여야 한다. 단, 더셀은 IPS가 제공하는 software를 오직 본 장비의 test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그 software를 복제, 변형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IPS는 더셀의 요청에 따라 본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더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EFEM의 사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Software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더셀은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③ 본 조에 따른 Software 지원의 시기,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.

## 제8조 (선행조건 사용)

- ① 더셀은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, 만약 제2조의 사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본 장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더셀은 그 사용 목적 및 사유에 관하여 IPS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.
- ② 더셀은 장비의 매뉴얼 또는 IPS 임직원의 지시사항에 따라 본 장비를 작동하여야 하고, 본 장비의 운영 담당자는 장비의 운영에 관하여 매뉴얼에 따른 지시사항 또는 본 장비의 IPS 담 당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# 제9조 (관리 책임)

더셀은 본 장비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본 장비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장비의 모든 관리 책임은 더셀이 부담한다. 만약 본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중 더셀 또는 본 장비의 운영에 관계한 관계자에 의한 장비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장비 수리 비용 일체를 더셀이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더셀이 IPS로부터 본 장비를 이송하여 Power Turn On 준비를 완료한 후 Test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Load Port, ATM Robot, FFU(Fan Filter Unit)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그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 또한 더셀은 본조 단서 조항에 따라 IPS로부터 본 장비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Power Turn On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.

## 제10조 (장비의 개조)

① 더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IPS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장비를 개조, 변경 또는 해체, reverse engineering, decompile, 분해(이하 "개조 등")할 수 없다. 만약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IPS 사전 동의를 받아 전술한 개조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개조 등의 범위와

- 목적, 개조 당사자 등 일체의 사항을 IPS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개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더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, 개조 등이 이루어진 장비에 대한 사용 범위는 본 계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 범위 내에 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## 제11조 (이설 및 반환)

- ① 더셀은 본 장비가 장착된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설을 할 경우에는 IPS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이설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더셀의 제조시설 내부에서의 이설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본 장비의 이설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더셀이 부담한다.
- ② 더셀은 본 계약에 따른 대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 장비의 반환 시점 및 방법 등을 사전에 IPS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반환되는 장비의 상태가 최초 IPS가 본 장비를 대여하는 장비상태의 수준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IPS는 더셀이 본 장비를 반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장비의 외견상 하자, 결함 등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발견된 사항을 더셀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더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IPS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(Test 결과 통지)

더셀은 TM 납품 시 본 장비의 전체 Cycle Test 시행하여 그 결과를 IPS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만약 당해 test를 시행하지 않은 TM을 IPS에게 납품하는 경우, IPS는 그 TM의 수령을 거부하고, 전체 Cycle Test를 시행한 후 TM의 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. Cycle Test 미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더셀이 부담한다. 다만, Cycle Test 시행일 및 시행되는 설비는 양사가 협의한 설비로부터 한다.

#### 제13조 (비밀보장)

양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사실, 본 장비의 제조자, 부품, 구성품 등에 관한 사항,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를 본 계약 기간 및 종료일로부터 3년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.

## 제14조 (지적재산권의 귀속)

더셀은 본 장비(대여 기간 종료 후 더셀이 별도로 제작한 EFEM을 포함한다)와 관련한 어떠한 단독적인 연구개발 활동 및 지적재산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만약 본 계약 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본 장비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당해 사항을 IP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, 그 기술 소유에 관한 사항을 IPS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15조 (손해배상)

당사자가 일방이 본 계약의 위반, 해태, 태만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16조 (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)

- ① 본 계약 기간은 제4조의 대여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만약 대여 기간이 본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,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13조. 제14조의 조항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.
- ②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2주전에 사전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양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본 장비, Software 및 비밀정보를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 비밀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 (일반 조항)

-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평택지방법원을 1심 전속 합의관할로 한다.
- ③ 본 계약상 양 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본 계약 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호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본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[// ]월 [28 ]일

더셀 주식회사

성명: <u>하대성이</u> 직위: 대표이사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

성명: <u>695-81-00374</u>

직위: 주식회사 변정우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3

제조업의 반도체장비와